

의안번호	제 179 호
의결연월일	2004.9.14

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8. 27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9. 1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9. 8.

제117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도시과장 : 이원용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제33조(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건축행위 제한이 심하여
-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이한 취약지구에서는 건축 제한으로 주민불편 및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동 조례 별표36(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제21조제23호(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」을 추가하려는 것임.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용역)

- 그동안 개발진흥지구 중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취약지구에 대하여 지나친 건축제한으로 민원발생과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고, 앞으로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시 용도지구를 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